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향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865

발의연월일: 2020. 9. 14.

발 의 자 : 양향자 · 양정숙 · 이병훈

전용기 · 김홍걸 · 최종윤

김수흥 • 이용빈 • 임호선

이형석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사용료 등의 감면규정을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경제자유구역을 신규로 지정함에 따라 기존 경제자유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, 신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 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상을 국내기업을 포함한 입주기업으로 확 대하는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」을 추진하고 있음.

이러한 취지에 맞춰 입주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(안 제78조의4 신설)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양향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86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##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8조의4(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) ① 「경제자유구역의 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(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입주기업"이라 한다)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, 재산세의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은 입주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.

- 1.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된 경우. 다만, 합병·분할 또는 분 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2.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액 감면 신청절차, 추징의 적용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<신 설> | 제78조의4(경제자유구역의 입주  |
|       | 기업에 대한 감면) ① 「경제   |
|       | 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  |
|       | 한 특별법」 제16조에 따라 경  |
|       | 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     |
|       | (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.    |
|       | 이하 이 조에서 "입주기업"이   |
|       | 라 한다)이 해당 사업에 직접   |
|       |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   |
|       |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  |
|       | 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, |
|       |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   |
|       | 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    |
|       | 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   |
|       | 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   |
|       |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  |
|       |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  |
|       | 산세를 면제받은 입주기업이     |
|       |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|
|       | 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    |
|       | 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.     |
|       | 1.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사  |
|       | 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   |

- 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 인이 해산된 경우. 다만, 합 병·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2.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
  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
   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
   사용하는 경우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액 감면 신청절차, 추징의 적용기준,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